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농업회사법인 한들 주식회사 외 19명
소유물건(2024타경63385)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주연중

감정평가서번호: B240823-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ROAN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 감정평가표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인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자

박

호

정



감정평가액 **₩2,765,568,000.-** (이십칠억육천오백오십육만팔천원정)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주연중		감정평가목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한들 주식회사 외 19명 (2024타경63385)		기준가치	시장가치		
			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8.27	2024.08.26~ 2024.08.27	2024.08.28	
감정 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6,592	토지	26,592	104,000	2,765,568,000
		이	하	여	백	
						₩2,765,568,000

심사의견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박

호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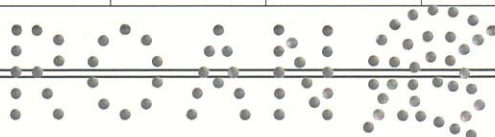
ROAN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합 계	산38-1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6,592	26,592	104,000	2,765,568,000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단가
				이	하	여	백	₩2,765,56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소재하고, "거먹골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본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 조 제 1 항에 의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다.

나.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에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에 의거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2 조 제 2 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년 8월 27 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가.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0 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27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실지조사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실지조사 내용은 후첨 “토지감정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본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물적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야대장 등 공부자료와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건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15,562 m²:11,030 m²)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별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 후, 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산망(KAPA HUB PLUS)상 면적을 기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토지 북측 일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국지 88)<도로법>’ 이나 그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목을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대상물건의 개요

기호(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 38-1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m ²)	도로교통	형상	지세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6,592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정

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가. 개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인근지대 상황,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면적,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 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

- ①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 · 군 · 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표준지의 선정

(2024.01.01기준)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지세	도로접면	공시지가 (원/㎡)
A	영동리 산 87-1	6,285.0	임야	보전관리	자연림	부정형	완경사	맹지	33,400
B	영동리 산 15	36,992.0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사다리	완경사	세로(가)	10,200

다. 시점수정

시,군,구 및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및 시점수정치
경기도 광주시 보전관리 (24.01.01~24.08.27)	2024.01.01 ~ 2024.07.31 : 1.048 2024.07.01 ~ 2024.07.31 : 0.187	$(1 + 0.01048) * (1 + 0.00187 * 27/31)$ ≒ 1.01213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24.01.01~24.08.27)	2024.01.01 ~ 2024.07.31 : 1.201 2024.07.01 ~ 2024.07.31 : 0.198	$(1 + 0.01201) * (1 + 0.00198 * 27/31)$ ≒ 1.01376

※ 24년 08 월의 지가변동률이 미 고시되어, 24년 07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의 비교

본건 (보전관리)/ 표준지 A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계
격차율	1.40	1.15	1.00	1.00	1.610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전반적인 교통의 편부)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합니다.				
본건(농림)/ 표준지 B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계
격차율	1.20	1.10	1.00	1.00	1.320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전반적인 교통의 편부)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합니다.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개념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누16300,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따라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과 평가사례(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quad \approx \quad \frac{\text{평가사례(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평가사례(거래사례) 기준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approx 평가사례(거래사례) \times (사정보정) \times 시점수정 \times 지역요인 \times 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approx 비교표준지 \times 시점수정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본건 인근의 거래사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총거래금액 (천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영동리 산***-**	임야	2,003	보전관리	162,000	80,878	2023-09-27
2	영동리 산***-**	임야	5,336中 928	보전관리	80,000	86,206	2024-04-19
3	영동리 산***-**	임야	11,802中 1,653	농림지역	30,000	18,148	2023-02-23
4	영동리 산**	임야	37,899中 1,487.61	농림지역	31,500	21,174	2022-04-26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단가: 일원 단위까지 표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본건 및 인근의 평가사례

기호	지번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토지단가(원/m ²)	평가목적	기준시점
1	영동리 산***-**	임	3,187.0	보전관리	122,000	법원경매	2024-05-28
2	영동리 산***-**	임	2,083.8	보전관리	99,000	법원경매	2024-05-16
3	영동리 ****-*	임	462.0	보전관리	137,000	시가참고	2023-06-21
4	영동리 ****-*	임	2,760.0	농림지역	34,000	시가참고	2023-06-21
5	영동리 산***-**	임	1,653.0	농림지역	26,000	법원경매	2024-02-13
6	영동리 산***-**	임	1,836.1	농림지역	27,000	법원경매	2024-05-16
7	영동리 산***-**	임	30,931.0 中 4,418	농림지역	18,000	법원경매	2023-05-31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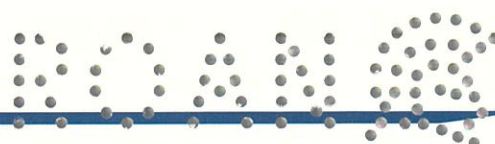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표준지(A)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평가사례 2>, 비교표준지(B)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평가사례 4>를 선정합니다.

➤ 평가사례 2 기준 (표준지 A)

구분	평가사례(원/㎡)	시점수정*1	지역요인*2	개별요인*3	산출금액(원/㎡)	격차율
	99,000	1.00588	1.000	0.948	94,404	2.793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산출금액(원/㎡)		
	33,400	1.01213		33,805		
산정 내역	*1시점수정	경기도 광주시 보전관리(24.05.16~24.08.27)				
	*2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3개별요인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격차율
		0.95	0.95	1.05	1.00	0.948
표준지는 사례 대비 행정적조건(사례 일부 농림지역)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평가사례 4 기준 (표준지 B)

구분	평가사례(원/㎡)	시점수정 ^{*1}	지역요인 ^{*2}	개별요인 ^{*3}	산출금액(원/㎡)	격차율
구분	34,000	1.01661	1.000	0.808	27,928	2.701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산출금액(원/㎡)		
	10,200	1.01376		10,340		
산정 내역	^{*1} 시점수정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23.06.21~24.08.27)				
	^{*2}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3} 개별요인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격차율
		0.95	0.85	1.00	1.00	0.808
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합니다.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결정의견	보정치
본건 토지가 속해 있는 인근지역 내 정상적인 거래가능 가격수준,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정도 등 제반조건을 고려해 본 결과 본건에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A: 2.79 표준지B: 2.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산정

본건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보전 관리	33,400	1.01213	1.000	1.610	2.79	151,849	152,000
농림	10,200	1.01376	1.000	1.320	2.70	36,853	37,000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 단가			$(152,000 \times 15,562\text{㎡}) + (37,000 \times 11,030\text{㎡}) / 26,592$ $\approx 104,000\text{원/㎡}$ <용도지역 비율: 보전관리지역 약 58.5%, 농림지역 약 41.5%>				

(적용단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가. 개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의 분석

기호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총거래금액 (천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1	영동리 산***-**	임야	2,003	보전관리	162,000	80,878	2023-09-27
2	영동리 산***-**	임야	5,336中 928	보전관리	80,000	86,206	2024-04-19
3	영동리 산***-**	임야	11,802中 1,653	농림지역	30,000	18,148	2023-02-23
4	영동리 산**	임야	37,899中 1,487.61	농림지역	31,500	21,174	2022-04-26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단가: 일원 단위까지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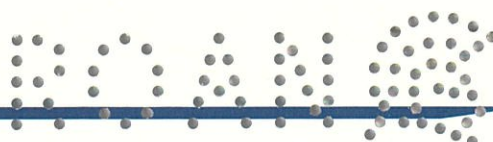
2) 거래사례의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결정의견

상기 거래사례 중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에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2,4>를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결정의견	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시점수정치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및 시점 수정치
[거래사례 2] 경기도 광주시 보전관리 (24.04.19~24.08.27)	2024.04.01 ~ 2024.04.30 : 0.220 2024.05.01 ~ 2024.05.31 : 0.198 2024.06.01 ~ 2024.06.30 : 0.135 2024.07.01 ~ 2024.07.31 : 0.187	$(1 + 0.00220 * 12/30) * (1 + 0.00198) * (1 + 0.00135) * (1 + 0.00187) * (1 + 0.00187 * 27/31)$ ≒ 1.00773
[거래사례 4]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22.04.26~24.08.27)	2022.04.01 ~ 2022.04.30 : 0.279 2022.05.01 ~ 2022.05.31 : 0.308 2022.06.01 ~ 2022.06.30 : 0.289 2022.07.01 ~ 2022.07.31 : 0.265 2022.08.01 ~ 2022.08.31 : 0.179 2022.09.01 ~ 2022.09.30 : 0.229 2022.10.01 ~ 2022.10.31 : 0.135 2022.11.01 ~ 2022.11.30 : 0.134 2022.12.01 ~ 2022.12.31 : 0.112 2023.01.01 ~ 2023.12.31 : 0.216 2024.01.01 ~ 2024.07.31 : 1.201 2024.07.01 ~ 2024.07.31 : 0.198	$(1 + 0.00279 * 5/30) * (1 + 0.00308) * (1 + 0.00289) * (1 + 0.00265) * (1 + 0.00179) * (1 + 0.00229) * (1 + 0.00135) * (1 + 0.00134) * (1 + 0.00112) * (1 + 0.00216) * (1 + 0.01201) * (1 + 0.00198 * 27/31)$ ≒ 1.03332

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본건 (보전관리)/ 거래사례 2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격차율	1.45	1.20	1.00	1.00	1.740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합니다.				
본건 (농림)/ 거래사례 4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격차율	1.40	1.20	0.95	1.00	1.596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행정적조건(사례 일부 보전관리)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합니다.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산정

본건	거래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보전 관리	86,206	1.00	1.00773	1.000	1.740	151,158	151,000
농림	21,174	1.00	1.03332	1.000	1.596	34,920	35,000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 단가		$\frac{(151,000 \times 15,562\text{㎡}) + (35,000 \times 11,030\text{㎡})}{26,592}$ $\approx 103,000\text{원/㎡}$ <용도지역 비율: 보전관리지역 약 58.5%, 농림지역 약 41.5%>					

(적용단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의 조정 및 토지가액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해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2 조 제 2 항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거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공시지가기준단가 (원/㎡)	거래사례기준단가 (원/㎡)	결정단가 (공시지가)	사정면적 (㎡)	감정평가액(원)
1	104,000	103,000	104,000	26,592	2,765,568,000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감정평가액(원)
토 지	104,000	26,592	2,765,568,000

2. 결정의견

상기 감정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제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소재하는 "거먹골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농경지, 지방도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 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북측 하향의 완경사 지대에 소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의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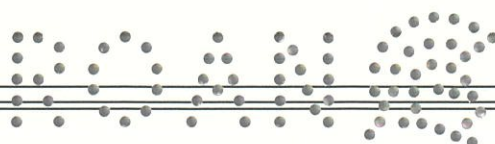
본건 북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변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종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접도구역(국지8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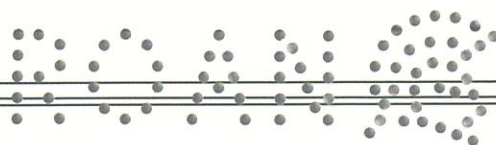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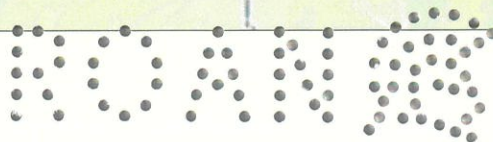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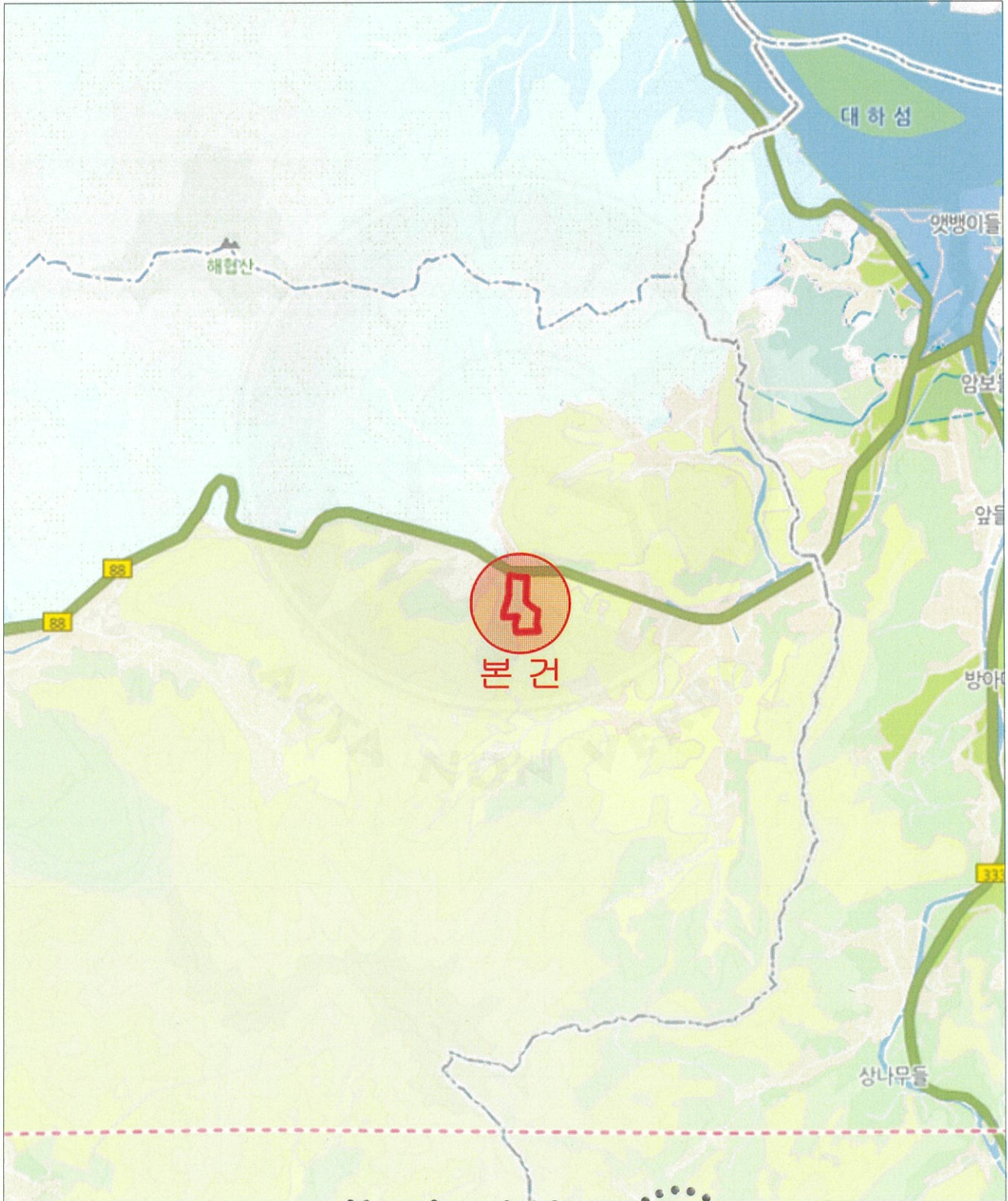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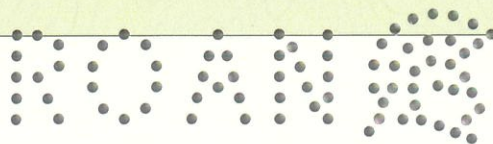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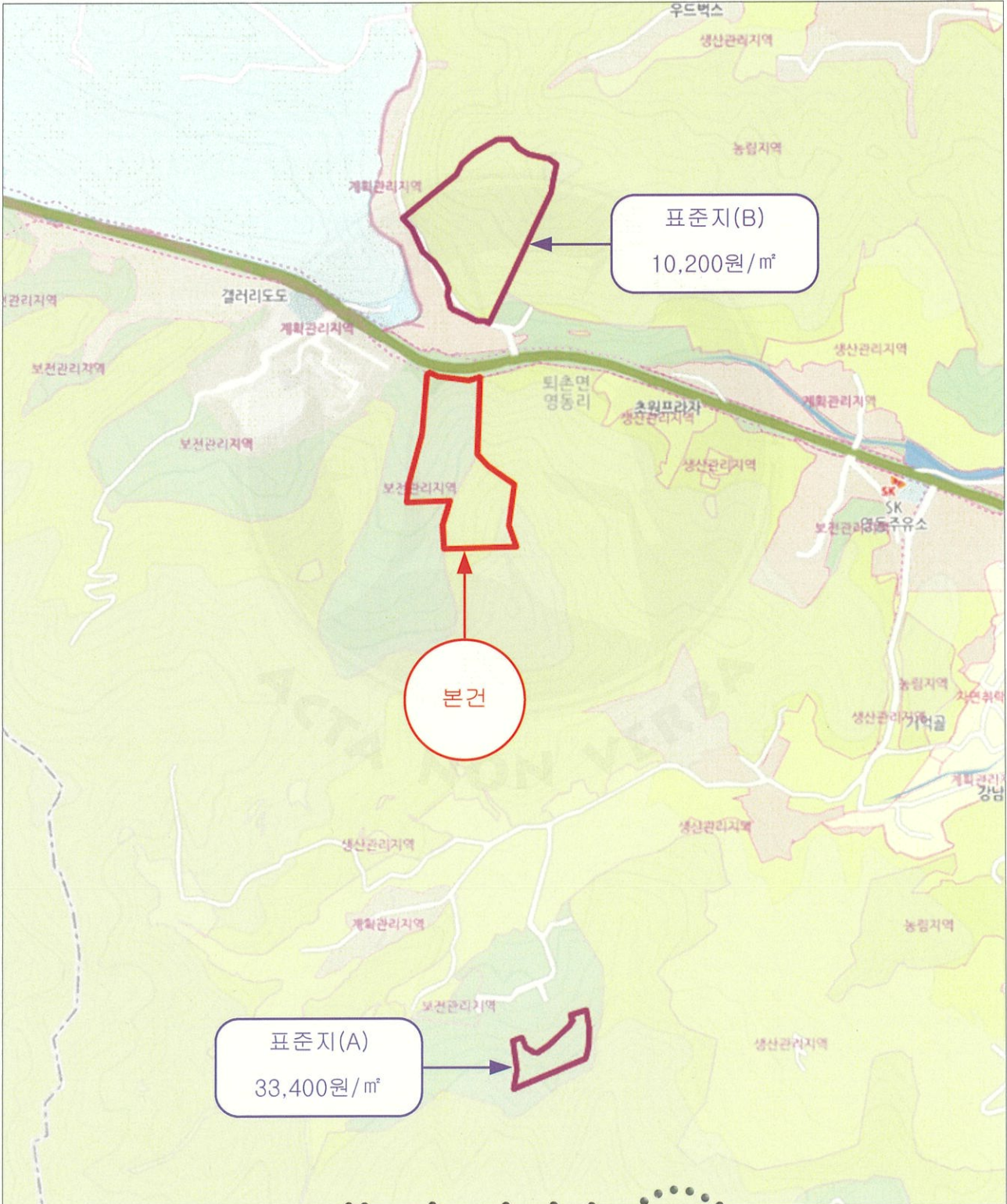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38-1



상세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38-1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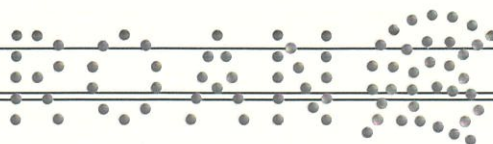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1



본건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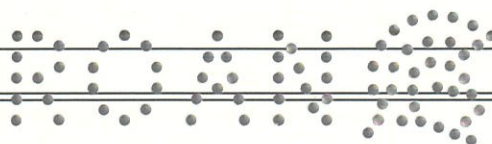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건 도로접면1



본건 도로접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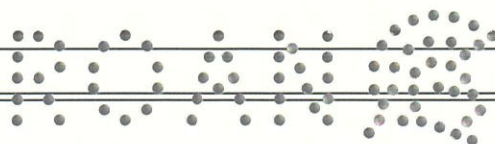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주위환경1



주위환경2



사 진 용 지



주위환경3



주위환경4

